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8. 11. 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정이유

사회복지사업법상 복지위원 위촉이 의무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저소득주민·아동·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,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·신고,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·사회복지시설과의 협력 등의 직무를 수행할 복지위원의 정수 등 활동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제정의 목적(안 제1조)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
나.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- 복지위원의 정수는 동별로 각 2인으로 하되 인구 3만 이상의 동은 3인으로 함

다. 복지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및 제4조)

- 복지위원은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함

라. 복지위원 직무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- 1) 지역사회의 저소득 주민·아동·노인·장애인·모자가정·요보호자등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1항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(이하 “사회복지대상자”라 한다)에 대한 선도 및 상담
- 2)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3)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, 사회복지시설, 기타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
- 4)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발굴 및 신고
- 5) 기타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

3. 조 례 안 : 따로붙임

4. 예산조치 : 2009년 예산편성시 회의·교육비용 반영

5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(2008. 10. 14 ~ 11. 3)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08. 11. 18)

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이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의 정수) 위원회의 정수는 동별로 각 2인으로 하되, 인구 3만 이상의 동은 3인으로 한다.

제3조(위촉)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.

1.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
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의 직무)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.

1. 지역사회의 저소득 주민·아동·노인·장애인·모자가정·요보호자 등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1항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(이하 “사회복지대상자”라 한다)에 대한 선도 및 상담
2.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3.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, 사회복지시설, 그 밖에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
4.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및 신고
5. 그 밖에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

제6조(해촉)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, 품위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제7조(회의) 구청장은 취약계층 발굴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수렴하고 복지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위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8조(교육) 구청장은 위원의 역할 및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등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9조(수당 등)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